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의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구분희	990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용한	9103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소희	920521-*****	충청북도 음성군
박영준	8605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수진	730505-*****	경기도 고양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구분희	(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구분희는 2020.10.22.에 ●●●●●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舊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고용한	(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한은 2021.7.28. ●●●●● '□□□□□□□□□□□□□□□□□□'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舊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만원
이소희	(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소희는 2020.12.14. ~ 2021.1.26.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舊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박영준	○○○○○○(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영준은 2021.3.16.~2021.4.30. 기간 중 ●●●●●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안수진	○○○○○○(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안수진은 2020.8.10. ●●●●●● '□□□□□□□□□□'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나. 유의사항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2023년 3월 13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oonse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귀하가 2023년 3월 13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